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95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서영교・임오경・한민수

강선우 • 백승아 • 박희승

이해식 • 윤준병 • 김준형

김동아 · 황정아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 ·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5년"을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	
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	
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	
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u>6년</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	②
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	자의	의	나에	반ㅎ	나여
반포	들을	한 ス	나는	<u>5년</u>	이ㅎ	l 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०) ह	하의	벌
금에	처한1	다.				

③ (생 략) <u><신 설></u>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u>제3항</u> <u>까지의</u>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u>6년</u>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영상물
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
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
<u>⑤</u>
까지의